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58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9.

제 출 자 : 동작구청장

1. 제안이유

동작골안전지킴이가 자율방재단으로 단체 통합이 완료됨에 따라 동작골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련하여 현장민원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5. 7. 2 ~ 07. 23) 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심사대상 아님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장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